

제14조(운영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나. 시보등 발간현황

##### ○ 시 보

- 근 거 : 대구직할시보조례(1987. 3. 11 조례 제2093호)
- 발간주기 : 월2회(매월 1, 15일)
- 발간수량 : 100,000부
- 배 부처 : 본청, 사업소, 소방본부, 상수도사업본부, 구청별(통, 반장, 지역주민용), 기관단체, 시·구의원, 재경인사, 종교단체, 약국, 병·의원등

##### ○ 시공보

- 근 거 : 대구직할시공보발행규정(1991. 4. 15 훈령 제784호)
- 발간주기 : 월3회(매월 10, 20, 30일)
- 발간수량 : 500부
- 배 부처 : 본청, 사업소, 구청, 동, 소방본부, 상수도사업본부

#### 다. 조례(안) 입법예고등

##### ○ 조례(안) 입법예고 – 불요(※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없음)

### 3. 大邱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審查報告書

#### 1. 審查過程

- 提出日字 : 1993年 9月 1日
- 提出者 : 大邱直轄市長
- 回附日字 : 1993年 9月 2日
- 上程 및 議決
  - 제24회 대구직할시의회(임시회)
    - └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'93. 9. 8
    - └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'93. 9. 8

#### 2. 提案說明 要旨

- 홍보여건 변화등으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기능 상실

### 3. 檢討報告 要旨

본 폐지조례(안)은 1984. 7. 12. 시정홍보 및 대민봉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, 대시민 홍보여건 변화등으로 '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,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실정이므로, 본 조례의 폐지(안)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.

다만,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대시민홍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방안 개발등 대시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質疑 및 答辯

- 없음

### 5. 討論事項

- 없음

### 6. 審查結果

- 원안가결(전원 찬성)

## 대구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### 1. 폐지사유

-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방안의 개발·조정·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봉사행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84. 7. 12. 대구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
- '87년이후 언론 자유화 조치로 신문, 방송사보등의 대시민 창구 다양화로 시민홍보 여건 호전과
- '89년 공보관실 직제 확대로 인한 자체 홍보대책 수립 및 국민홍보위원회으로 하여금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
- 또한 다른 협의회 및 위원회 등에서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주기능인 유관기관, 단체 상호간 홍보활동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
- 예산상의 불필요한 낭비와 위원들의 참여기피를 초래하는 대구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운영실적도 거의 없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.